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신설)
 - 행안부장관이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5년이 시작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또한,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 추진 근거를 마련함
- 나.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신설 및 중복 표현 정비(안 제2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자체점검 실시일로부터 10일로 하고, 종전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는 ‘삭제’
- 다. 승강기안전공단의 설비기준 일부 정비(안 제51조 별표 11)
 - 공단의 분동 보유 기준(3ton →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 포함)을

타 승강기 사업자와 동일하게 임대·대여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단의 연구·개발 목적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안 제18조·제21조 별표5)
- 연구·개발 목적으로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단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공단 ‘추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할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시·도지사의 경우 공보를 말한다)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인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4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

시일로부터 10일을 말한다.

별표 5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과학기술원
 - 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 너.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 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
 - 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공단
2. 전시회 전시 또는 박람회 출품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3.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

1. 안전인증

구분		인력 및 설비기준
인증 인력	특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인증 또는 검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라 한다)이 1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이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라 한다)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9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22년 이상인 사람
	고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중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2명 이상.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중급인증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가.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초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시험·검사 설비	가. 승강기 주행 시험 등을 위한 설비 나. 하중시험을 위한 분동 5톤 이상 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검사설비 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검사설비

2.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구분		인력 및 설비기준
검사 인력	특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9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22년 이상인 사람
	고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중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6명 이상.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중급검사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초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검사설비	가. 금속 줄자 나. 테이퍼형 틸트계이지 다. 아들자 캘리퍼스 라. 전류계 마. 전압계 바. 절연저항계 사. 밝기측정기 아. 순간식 회전속도계 자. 감속도 측정기 차. 도어운동에너지 측정기 카. 각도계 2대 이상 타. 인장압축 측정기 2대 이상 파. 토크렌치 2대 이상 하. 접지저항계 2대 이상 거. 분동 3톤 이상((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비고

1. 제1호에 따른 인증인력(이하"인증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인력(이하"검사인력"이라 한다)은 직접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증인력 또는 검사인력 기준보다 상위의 인증인력 또는 검사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각 지사 또는 출장소별로 갖춰야 한다. 다만, 출장소의 검사인력은 고급검사인력 1명, 중급검사인력 2명, 초급검사인력 1명으로 할 수 있다.
4. 검사인력은 1인당 연간 설치검사 1,100대, 정기검사 1,500대, 수시검사 1,100대, 정밀안전검사 1,000대를 각각 초과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여러 종류의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상한 대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대수를 산정한다.
5. 초급인증인력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6. 초급검사인력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설치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7. 검사설비란의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검사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8. 그 밖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춰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할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u>

제5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생략)

<신설>

2. ~ 7. (생략)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시·도지사의 경우 공보를 말한다)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인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위원회-----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

② ~ ⑨ (생 략) <u>제6조 · 제7조</u> (생 략) 제14조(제조 · 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u>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 · 수입업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 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생 략)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u>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u> <u><신 설></u>	까지와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u>제7조 · 제7조의2</u>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14조(제조 · 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u>시 · 도지사</u>-----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통보하여야</u> ----- ----- ----- -----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로부터 10일을 말한다.
---	---